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9. 7. 14.

사회건설위원회

1. 審 査 經 過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6월 23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7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제14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(2009년 7월 2일) 상정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 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박주현)

가. 개정이유

○ 경상남도 창녕군 화왕산 억새태우기 지역축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 마련의 필요성으로 인하여,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 해대처계획 포함)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관련 실 무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되도록 절 차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안전관리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에 구가 주 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의 심의를 포함함 (안 제8조제1항)
-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 개의요건과 의결정족수 충족요 건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와 관련된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무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(안 제8조제4항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: 이남식)

○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경상남도 창녕군 행사장에서 발생한 화왕산 산불 등 최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바,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에서 "지역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개정 추진 협조공문"(서울특별시 방재기획과-5788)이 시달되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審查結課: 原案可決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가구의 구성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 220 호 제출연월일 : 2009. 6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경상남도 창녕군 화왕산 억새태우기 지역축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마련의 필요성으로 인하여,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관련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인심의가 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두는 목적에 「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을 심의」를 포함
- 나. 실무위원회의 개의요건과 의결정족수관련(제8조 제4항) 조문에 「지역 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의 경우에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단서조문을 추가하여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신속하고 효율적인심의를 도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제11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다. 협 의 : 문화체육과와 협의되었음

라. 입법예고 : 2009. 5.14.~6. 3.(20일) 결과 : 의견없음

마. 규제심사 : 심사대상 사무없음.

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·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.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"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"을 "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을 심의하는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개 정 안 혀 했 제8조(실무위원회) ①위원회의 회의에 부 제8조(실무위원회) ① ---칠의안을 미리 검토하고.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하며 서울특별 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 시 영등포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회를 두며,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한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포함)을 심의하는 등 ----②~③(생략) ②~③(현행과 같음)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 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로 의결한다. 다만, 지역축제의 안전관 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 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.